

【 10 】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5. 16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 1. 1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함.
- 나. 위원회의 명칭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
- 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과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2항중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을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2항중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을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2항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로 구분 운영한다.

제6조제1항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를 “간사와 서기를 둔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간사는 부동산관리담당이며, 서기는 토지평가업무담당자로 한다”를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각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중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9조제4항1호중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부칙 제2항중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한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u>	<u>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u> 규정에 의한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p>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u>지가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생략)</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 <u>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u>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p> <p>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6.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8.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5조(회의) ①(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설></p>	<p>제5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 ----- 시작 ----- -----</p> <p>③위원회의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로 구분 운영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u>간사 1인과 서기 1인</u>을 둔다.</p> <p>②간사는 <u>부동산관리담당</u>이 되며, 서기는 <u>토지평가업무담당</u>자로 한다.</p> <p>③(생략)</p>	<p>제6조(간사 등) ①----- <u>간사와 서기</u>를 -----</p> <p>②간사는 <u>심의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주사</u>로 하며, 서기는 <u>각 업무담당 직원</u>으로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u>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7조(의견청취) -----</p> <p>----- <u>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u></p> <p>-----</p> <p>-----</p>
<p>제9조(소위원회 등) ①~③(생략)</p> <p>④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1.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u>토지평가위원회</u>에 상정</p> <p>2. (생략)</p>	<p>제9조(소위원회 등)①~③(현행과 같음)</p> <p>④ -----</p> <p>1. -----</p> <p>----- <u>부동산평가위원회</u> -----</p> <p>2. (현행과 같음)</p>